

(신 설)	<p>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</p>	본 인	(인)	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른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내용 및 판매기업의 확인(자필기재) 절차 신설
-------	--	-----	-----	---

2. 시행일 : 2015년 4월 30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: 시행일 이후 신규 약정고객부터 적용